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2서식] <개정 2018. 11. 27.>

오염토양반출정화(변경)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
제출인	성명(대표자명)	생년월일
	상호(명칭)	
	주소(사업장소재지)	전화번호

반출정화 사유	(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)

오염토양 현황	오염물질 및 농도
	오염토양의 양(㎥)
	오염현장소재지
	오염사유

운반 계획	운반방법(자가 또는 위탁운반 여부/위탁운반의 경우 운전자 병기)
	운반차량(번호)
	운반장소(거리, ㎞)
	운반경로(소요시간, 운송시 통과하는 주요지점(도로) 등을 "→"로 연결하여 기재)

정화 계획	정화방법		
	정화업자	(대표자 :	연락처 :)
	정화소요기간		
	정화검증기관(토양관련전문기관)	(대표자 :	연락처 :)
	정화토양 처리계획		

변경 사항	변경 전
	변경 후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제3항 단서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토양반출정화(변경)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최초 계획의 경우 가. 운반위탁계약서 사본(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나.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.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. 변경 계획의 경우: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계획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승 인
제출인		시 · 군 · 구		시 · 군 · 구		시 · 군 · 구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